

2021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

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생활부

작성자 : 여동은 (051-606-216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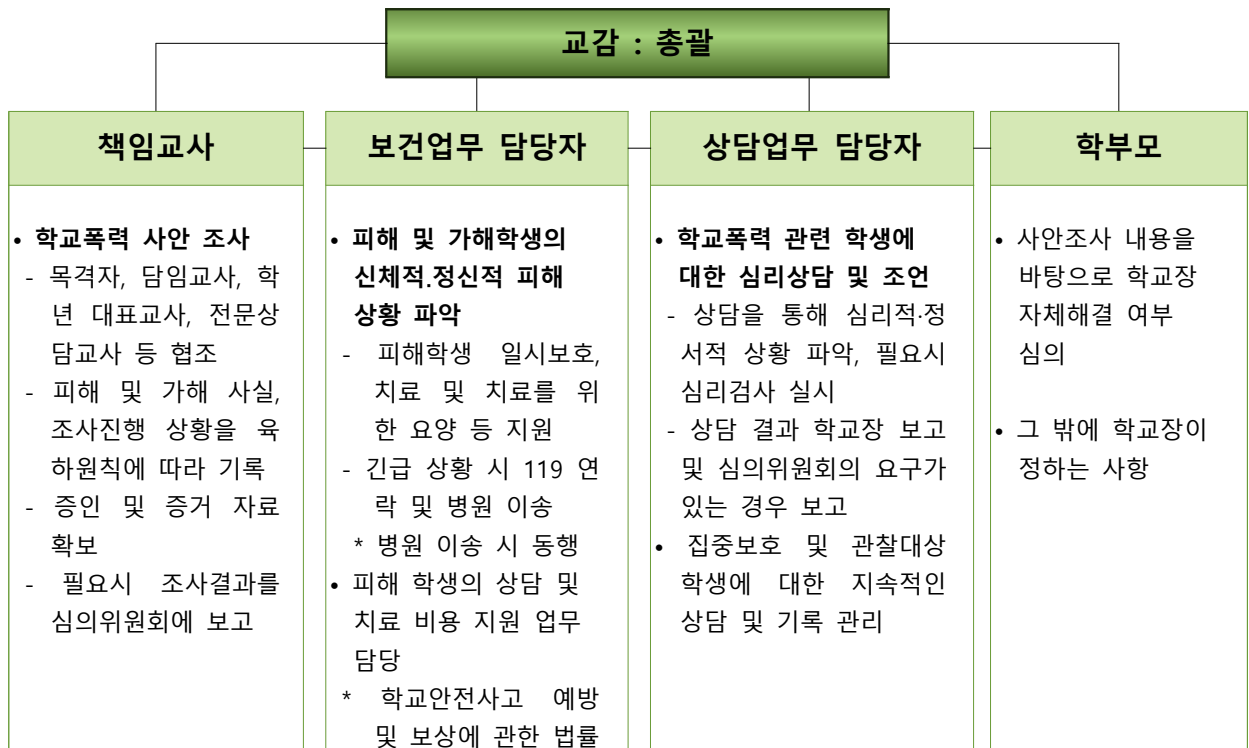
확인자 : 오진호 (051-606-2170)

1.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

가.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

연번	구성원	성명	연락처	운영기간(임기)	비고
1	교감	***	606-2101	2021.3.1.~2022.2.28.	
2	책임교사	***	606-2170	2021.3.1.~2022.2.28.	
3	보건	***	비공개	2021.3.1.~2022.2.28.	
4	상담	***	비공개	2021.3.1.~2022.2.28.	
5	학부모	***	비공개	2021.3.1.~2022.2.28.	
6	학부모	***	비공개	2021.3.1.~2022.2.28.	
7	학부모	***	비공개	2021.3.1.~2022.2.28.	
8	학부모	***	비공개	2021.3.1.~2022.2.28.	
	행정담당	***	606-2167	2021.3.1.~2022.2.28	학생생활부

○ 전담기구 조직 및 업무분장



※ 사안조사방법 : 사안조사는 학교소속 교직원 또는 전담기구에서 실시하며 단, 학부모위원은 사안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.

○ 전담기구 회의의 소집 및 의결 방법

- 사안에 따라 유선연락, 문자, 메일, 서면, 온·오프라인 회의 등의 방법으로 결정

○ 전담기구 심의의결 사항 및 역할

- ① 사안접수 및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
- ② 교육(지원)청 보고
- ③ 학교폭력 사안조사
- ④ 사안조사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
- 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
- ⑥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
- ⑦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
- ⑧ 그 밖에 관련 규정 및 법, 교육부(교육(지원)청)에서 지침으로 정하는 사항

○ 전담기구 심의의결 방법

- 의결정족수 :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3분의 과반수 이상 참여 또는 출석
- 심의의결 방법 : 학교폭력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또는 위원간의 협의
- ※ 의결 시 반드시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
- 그 밖에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(제척·기피·회피,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사안, 아동학대 사안 등)에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정할 수 있다.

나. 학교폭력 신고체계

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	단위학교 신고체계 구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연중 24시간 운영 . 학부모대상 공지 . 홈페이지 홍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목격자 신고 활성화 노력 (방관자 없애기 예방교육 철저) .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철저

다.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

1) 사안 조사 책임자 및 담당자

- 조사 책임자 : 학교장
- 조사 담당자 : 학교폭력 전담기구(법적 기구) 또는 소속 교원(법률 제14조 제3항)

2) 단계별 조치 사항

단계	처리 내용
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	•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, 학생,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



신고 접수 및 학교장·교육청 보고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상<양식1-1>에 반드시 기록하고, 학교장에게 보고 •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교육(지원)청에 48시간 이내에 공문보고<양식1-3, 1-2> • 신고 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
----------------------	---



즉시조치 (필요 시 긴급조치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필요 시 피해 및 가해학생 즉시 격리. 가해학생이 눈빛·표정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 못하도록 조치 • 관련학생 안전조치(피해학생-보건실 응급처치·119 신고·병의원 진료 등, 가해학생-격리·심리적 안정 등) •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• 피해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• 성폭력인 경우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,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·신체적 피해 치유 • 사안 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,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 조치 실시 가능<양식2-3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

사안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<양식2-1>, <양식2-2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련학생의 면담, 주변 학생 조사, 설문조사,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•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•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<양식2-4> • 성폭력의 경우,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• 장애학생,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,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• 필요한 경우,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
-------------	---



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~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<양식3-1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주 이상의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-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-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-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

자체해결 요건 충족

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

•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<양식3-2>

↓ 동의

학교장 자체해결



자체해결 요건 미충족
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

• 피해 및 가해 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에 보고

↓

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
→
부동의

- ※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,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.
- ※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,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할 수 있음

라. 학교폭력예방 계획(안)

1) 전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

가)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 방안 훈련

- 피해 시 “그만해”라고 말할 수 있는 훈련
- 피해 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훈련

나) 학교폭력 피해자 조력 훈련

-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를 돕는 훈련
- 학교폭력 목격 시 신고하는 훈련

다) 공감, 의사소통, 감정조절 등의 교육을 위한 활동 포함

라) 학생참여(캠페인, 동아리 등) 활동 포함

마) 학부모 교육 시 가족 간 의사소통 강화 내용 포함

바)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진행(어울림 프로그램)

2)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

대상	시기	내용	비고
학생	학기 중 1회, 총2회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 *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내용 안내 * 지능정보화 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내용 안내 *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 *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	온라인
교직원	학기 중 1회, 총2회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 *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내용 안내 * 지능정보화 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내용 안내 *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 *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*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연수 소개 	온라인
학부모	학기 중 1회, 총2회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정보 제공 * 자녀 자살예방을 위한 부모역할 안내 *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녀훈육법 안내 * 학교 상담서비스 및 이용방법 안내 * 자녀 교육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연수 소개 	자료배포

3) 교내외 순찰 및 안전대책

가) 학교 내 순찰 : 일 4회(오전 및 오후, 야간 2회) 학교 내 및 폭력사각지대로 예상되는 지역 순찰

나) CCTV 모니터링 : 학교 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

다) 담임, 상담, 보건, 사감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 대처

라)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강화 및 개발 운영

- 담임모임 시간을 활용한 인성교육 강화
- 교원의 인성지도능력강화를 위한 상담연수 실시

2. 2020학년도 학생, 교직원,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적

가. 학생 대상

구분	정규교과수업	정규교과수업외	평균 교육시간
2020년 1학기	0	50분	50분
2020년 2학기	0	50분	50분

나. 교직원, 학부모 대상

구분	대상	횟수	참여인원	참여비율
2020년 1학기	교직원	1	107명	84.3%
	학부모	1	365명	-
2020년 2학기	교직원	1	118명	91.5%
	학부모	1	359명	-

다. 학생 중심 예방프로그램 운영

구분	대상	또래조정	또래상담	자치법정	또래보호 등 기타 학생자치활동
2020년 1학기	지도교사수	0	1	0	0
	참여학생수	0	16	0	0
2020년 2학기	지도교사수	0	1	0	0
	참여학생수	0	16	0	0